###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 824 2023년 6월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5월 30일, 고광민 의원(찬성자 51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23년 6월 20일 상정, 수정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고광민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(1) 어린이 및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.
- (2)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.
- (3)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
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## ■ 개 요

○ 동 제정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위험예방 및 안전확 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([표] 참조).

#### [표] 제정안과 개정안 주요 내용

제 정 안	주요 내용
제1조(목적)	•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
제2조(정의)	• "어린이", "보호자"에 대한 정의
제3조(시장 등의 책무)	• 시장, 보호자의 어린이 안전 확보 등에 관련한 책무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<ul> <li>시장은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</li> <li>포함사항</li> <li>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</li> <li>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</li> <li>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</li> <li>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</li> <li>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</li> <li>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ul>
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	<ul> <li>안전보장 사업</li> <li>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·연구·홍보</li> <li>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</li> <li>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</li> <li>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설비, 복장, 장비 등의 확충·정비</li> <li>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li>안전보장 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</li> </ul>
제6조(복장 및 장비의 지급)	<ul><li>어린이에게 안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지급</li><li>보호자의 어린이 안전 복장 및 장비 착용 노력</li></ul>
제7조(사고발생 시 대처)~제10조(시 행규칙)	<ul> <li>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, 타 지자체, 민간단체 등과 정보의 교류 및 협력(안 제7조)</li> <li>응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(안 제8조)</li> <li>어린이 안전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(안 제9조)</li> <li>시행규칙(안 제10조)</li> </ul>

### ■ 어린이 안전 및 관련 제도 현황

-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질식사고, 수영장 사고, 놀이기구 멈춤 사고, 급식 식중독 사고, 질소과자 사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-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'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(명/10만명)'은
   2012년 4.2에서 2021년 2.2로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영국
   2.0, 노르웨이 1.1(2015년) 등 OECD 주요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수준을 보이고 있음.



[그림] 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(명/10만명)

- 한편, 국민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이 점차 확대·강화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.
- 이에 정부는 2003년 "어린이 안전원년"으로 선포한 이후 수차 례에 걸쳐 어린이 안전에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·추진해 왔지

만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체계의 정립 등이 어려워 세부과 제 이행 및 과제관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.

- 2020년 5월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현재는 "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(2022~2026)"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.
- 이 같은 맥락에서 동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 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 등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 제정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
- 참고로,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 정·시행 중인 곳은 다음 [표]와 같음.

[표] 광역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안전 관련 조례 제정·시행현황

연번	지자체	조례	제정
1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	2013년 5월 27일
2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	2012년 12월 31일
3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	2010년 1월 15일
4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	2009년 10월 9일
5	경기도	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	2019년 8월 6일
6	충청남도	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	2022년 12월 30일
7	전라남도	전라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	2018년 12월 31일
8	경상북도	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	2012년 5월 31일
9	경상남도	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	2010년 6월 3일
10	강원특별자치도	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	2022년 3월 4일

### ■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

### 1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○ 안 제2조는 "어린이"와 "보호자"에 대해 「어린이안전에 관한 법률」(이하'법')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각각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어린이"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<sup>1)</sup>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2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정안의 경우 "어린이"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"보호자"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한 문구로 표현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아래 [표]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([표] 참조).

#### [표] 안 제2조 수정의견(안)

제 정 안	수정의견(안)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정의)	
뜻은 다음과 같다.		
1. "어린이"란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	1	
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		
따른 <u>사람을</u> 말한다.	<u>13세 미만의 사람을</u>	
2. "보호자"란 <u>친권자</u> , 후견인, 그 밖에	2 <u>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</u>	
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	<u>자</u>	
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		
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		
사람을 말한다.		

<sup>1)</sup>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sup>1. &</sup>quot;어린이"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
### 2) 시장 등의 책무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시장과 보호자에 대해 어린이안전 확보와 관련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 제4조²) 및 제5조³)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.
- 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3)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
○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, 어린이 안전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,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등을 포함하는 '어린이 안전 시행계획'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<sup>2)</sup>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<sup>3)</sup> **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**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
- 3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
- 4.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
- 5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
- 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이와 관련하여 법 제8조4)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7조5)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 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을 수립·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한 조치라 여겨지며.
- 안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역시 법 제7

- 1.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- 2.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- 3.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
- 4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- 5.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,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sup>4)</sup>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.

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점검·제출·보고, 시행 결과의 제출·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sup>5)</sup> 제7조(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근간하여 시장이 수립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음.

#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포함사항

- 1.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- 2.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- 3.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
- 4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- 5.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,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포함사항

- 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
- 3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
- 4.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
- 5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
- 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4) 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(안 제5조)

○ 안 제5조는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
- 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· 운영
- 3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
- 4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설비, 복장, 장비 등의 확충・정비
- 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먼저, 제1항에서는 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한 조사·연구·홍보,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·운 영,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, 설비·복장·장비 등의 확충·정 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.
- 이는 안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포함사항 중 안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됨.
- 다만, 제4호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'복장'과 '장비' 와 관련하여 '복장'과 '장비'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확충·정비대상으로써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'시설'과 '용품'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(〔표〕참조).

### [표] 안 제5조 수정의견(안)

제 정 안	수정의견(안)
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 ① 시	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 ①
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	
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
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·연구·	1
홍보	
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	2
. 운영	
3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	3
및 보호 활동	
4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<u>설비, 복장,</u>	4 <u>시설, 설비,</u>
<u>장비</u> 등의 확충·정비	용품
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	5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
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	②

### 5) 복장 및 장비의 지급(안 제6조)

○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6조제1항),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무(안 제6조제2항)를 규정하고 있음.

제6조(복장 및 장비의 지급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항의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및 장비 지급 관련 사항 은 안 제5조제4항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여겨지며,
- 여기서, 복장과 장비의 경우 안전 관련 유니폼과 같은 단일 복장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린이가 간단하게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각종 안전용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짐.
- 이는 본 조항이 13세 미만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시장으로 하여금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관리 유니폼과 통일된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것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며,

○ 따라서 안 제5조제4항 관련 수정의견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"복장 및 장비"를 "안전용품"으로, "지급"을 "지원"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#### [표] 안 제6조 수정의견(안)

제 정 안	수정의견(안)
제6조( <u>복장 및 장비의 지급</u> ) ① 시장은 어	제6조( <u>안전용품의 지원</u> ) ①
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	
이에게 <u>복<b>장 및 장비를 지급할</b></u> 수 있다.	<u>안전용품을 지원할</u>
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	②
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	
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<u><b>복장 또는 장비</b></u>	<u>안전용품을</u>
<u>를</u>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

- 다음으로, 제2항에서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에게 안전 복장 및 장비를 착용시키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 제5조 제1항6)에 따른 보호자 책무의 범위 내에서 보다 세부적인 지 침을 주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 동 등 외부 교육활동에 있어서 통일된 복장 및 장비를 착용함 으로써 안전의식 고취와 어린이 안전문화 저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안전 관련 복장이나 장비의 경우 안 제5조제2항에서 규 정한 안전보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(시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) 등에 입소하거나 안전 관련 프로그 램에 참여할 때 통일된 유니폼 형식으로 착용할 기회가 있을

<sup>6)</sup> 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 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것으로 여겨지는바,

○ 복장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 등 현실성을 감안하여 '복장 또는 장비'를 '안전용품'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짐.

### 6) 기타(안 제7조~안 제9조)

- 안 제7조는 '정보의 교류 및 협력', 안 제8조는 '구조 활동', 안 제9조는 '홍보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어린이 안전수 준 향상을 위한 공공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, 구조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, 홍보자료의 제작·보급 등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 안 전보장을 위해 시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할 일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여겨짐.
- 제7조(정보의 교류 및 협력)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 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영 •유아보육시설, 전문기관,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8조(구조 활동)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,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- 제9조(홍보)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### ■ 종합의견

○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제정되어 시행중인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등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

규정하고 있으며.

-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 각종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안전수준 제고는 물론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의 내용 중 어린이 안전 보장에 필요한 '복장 또는 장비' 등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임.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- 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824 제 안 일 자 : 2023년 6월 20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○ 안 제2조의 정의를 관련법 조항을 인용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 가 있어 보이고, 안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조례안의 내용 중 어린이 안전 보장에 필요한 '복장 또는 장비' 등 그 의미가 구체 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적 수정이 필요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"어린이"와 "보호자"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정의를 준용하여 통일성을 기합(안 제2조).
- 나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확충·정비사업 중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한 "복장, 장비"를 "설비, 용품"으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제 4호).
- 다. 시장이 어린이에게 지급토록 한 "복장 및 장비"를 "안전용품"의 지원으로 수정함(안 제6조).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"사람"을 "13세 미만의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친권자"를 "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"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"설비, 복장, 장비"를 "시설, 설비, 용품"으로 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 "(복장 및 장비의 지급)"을 "(안전용품의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복장 및 장비를 지급"을 "안전용품을 지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복장 또는 장비를"을 "안전용품을"로 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어린이"란 「어린이안전관리에	1
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	
제3조제1호에 따른 <u>사람</u> 을 말한	<u>13세 미만의</u>
다.	<u>사람</u>
2. "보호자"란 <u>친권자</u> , 후견인, 그	2 <u>법 제3조제2호에 따른</u>
밖에 어린이를 보호・양육・교육	<u>친권자</u>
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	
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	
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	
사람을 말한다.	
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	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
등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	등) ①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	
할 수 있다.	
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·	1
연구・홍보	
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	2
의 개발・운영	
3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	3
소 제거 및 보호 활동	
4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설비,	4 <u>시설,</u>
<u>복장, 장비</u> 등의 확충·정비	<u>설비, 용품</u>
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	5
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
사업	
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	②
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	
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	

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복장 및 장비의 지급) ① 시
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
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복장 및 장
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
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
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어린이"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 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보호자"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어린이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,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 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
- 2.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
- 3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
- 4.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
- 5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
- 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**제5조(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)**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 · 연구 · 홍보
  - 2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· 운영
  - 3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
  - 4.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, 설비,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
  - 5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안전용품의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 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정보의 교류 및 협력)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, 영·유아보육시설, 전문기관,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8조(구조 활동)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, 사고로 인한 응급

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